

#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신경제 정책과 환경보호에 대한 고찰

〈상〉



안경문

〈부산직할시 남구청 환경보호과장〉

## 목 차

- I. 머리말
- II.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와 국민의 관계
- III. 부산의 경제 현황
- IV. 행정권한과 행정위임
  - 1. 행정 권한과 행정 권한의 위임
  - 2. 행정 행위와 행정 권한 초과
- V. 환경보호와 경제정책
- VI. 맺음말
- 참고문헌

### I. 머리말

우리나라는 60년대말 부터 산업사회로 달려왔다. 그 여파로 환경오염이 심화되었으며, 본고에서는 환경오염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아시아의 4머리 용이라는 나라중에 한 마리에 해당되는, 이른 바 개발도상국으로 지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몇 년전부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용에서 지렁이로 변화했다고 평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문민 정부에서 신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심화될 뿐, 오히려 환경문제 해결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지역개발은 늦어지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게 한다. 왜냐하면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은 권한과 책임의 관계이므로 환경보전을 등한시하는 것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같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하나 밖에 없는 지구를 살리자'는 오래전부터의 구호를 실천하자는 전인류적 관심으로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에 있어 국제환경의 주요한 요소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지구환경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듯이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 사회에서 외면 당할 뿐 만 아니라 경제성장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기로 한다.

특히 공해방지행정에서 환경보호행정으로 전환된 현실이 환경보호행정 전환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II.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와 국민의 관계

우리나라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여하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 지난해 제20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선언을 하였다. 그 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국민 3자 관계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국가발전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은 인간존재의 모체이며 삶의 터전이다. 인간은 공기와 물과 흙과 같은 환경의 은혜없이 살 수 없다.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을 똑 바로 인식하고 환경용량의 범위내에서 자제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논리규범이다. 이를 어기는 사람의 행위와 무관심이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와 지구의 존속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60년대 이래 급속히 진전 되어온 산업화와 도시화로 우리의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지금 적절히 대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환경은 더욱 오염되어 품위있고, 건전한 삶의 유지는 물론 지속적인 국가발전도 어렵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환경오염이 몰고 올 재앙을 막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슬기를 총집결하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보전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왔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전한 삶을 누릴 권리와 환경을 보전하여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세대와 미래의 후손들까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의 환경보전

**환경오염이 몰고 올 재앙을 막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슬기를 총집결하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보전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왔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전한 삶을 누릴 권리와 환경을  
보전하여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세대와 미래의 후손들까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기본원칙을 거래의 의지로  
선언한다고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문에는 명시되어 있다.**

기본원칙을 거래의 의지로 선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경보전기본원칙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국민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로써 광의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환경보전과 협의의 환경보전으로 나누고 있다.

광의의 환경변화에 대한 제도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협의의 환경보전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자연환경보전법, 하천법 등이 있다. 그리고 광의의 환경변화에 대한 제도와 협의의 환경보전을 서로 연결하는 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볼 수 있다.

상기와 같은 환경보전과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와 관계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이 있다.

이 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와 분쟁조정을 위한 알선, 조정 및 재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환경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산업활동에 기인되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본다.

그 내용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 기타 산

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공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Ⅲ. 부산의 경제 현황

인구 3,893천명이 살고 있는 부산은 한반도의 동남서에 위치한 천혜의 좋은 항구로 '한국 제1의 항구도시'이고, 국제교역의 역할을 하여 왔다.

산업구조는 취업인구를 기준으로 1차산업 1.8%, 2차산업 37.3%, 3차산업 60.9%로 구성되어 있고, 2차산업은 신발, 섬유 등 노동집약형 경공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77년부터 1991년까지 부산의 유망기업인 대기업과 장래를 보고 경영을 하는 기업 446개 업체가 타시·도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현재 가동중에 있는 기업은 좋은 무역 조건과 노동집약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전체의 97.3%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공장이 타 시·도로 이전한 결과 잔유하는 기업의 공업입지는 다음과 같다.

〈표 1〉 용도지역별 공업입지 상황

구 분	계	공업지역			비공업지역			
		소 계	전 용	준공업	소 계	주 거	상 업	녹 지
입 체 수	6,741	3,744	1,156	2,588	2,997	2,106	596	295
(%)	(100)	(55.5)	(17.1)	(38.4)	(44.5)	(31.3)	(8.8)	(4.4)
대지면적 (km <sup>2</sup> )	14.05	8.81	3.55	5.26	5.24	2.73	0.52	1.99
종업원수	364,196	234,857	75,550	159,307	129,339	93,707	27,109	8,523

공업지역이 3,744개소이고, 전용공업지역에 1,156개소, 준공업지역에 2,588개소이며, 비공업지역에는 2,997개소이다. 그 내용을 보면 주거지역에 2,106개소, 상업지역에 596개소, 녹지지역에 295개소가 있다. 상세한 공업입지와 관련 상황은 다음 도표1과 같다.

공업지역의 변경 추세를 보면, 1970년은 39.29km<sup>2</sup>의 공업지역이 1991년에는 32.9km<sup>2</sup>고 20년동안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약 17%로 감소하였다.

공업입지 기반 확충을 위하여

- 명지, 녹산산업기지 개발
- 신호리 지방공단 조성

○아파트형 공장건설 확대를 추진중에 있으며, 낙후된 공업구조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2001년까지 강서구 지사동 일원에 200만평 규모의 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을 위하여 추진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며,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 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장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

○준공업지역 :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때

그리고 도시계획을 유보한 지역은 녹지지역이 있다. 녹지지역은 보건위생, 공해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이며, 이 지역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 환경 경관, 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자연녹지지역 :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때

여기서 보전녹지지역이 개발하려고 하는 동향이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을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자연녹지지역이 1970년은 210.1km<sup>2</sup>에서 1991년은 371.3km<sup>2</sup>로 151%신장되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131.4km<sup>2</sup>가 있다. 이것은 대부분 '89.1.1행정구역시 편입된 지역으로 공업단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자연녹지지역과 공업지역 등 경제활동이 되는 지역과는 지가 차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경제활동이 허용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지역이 넓으면 넓을 수록 지가(地價)가 낮아지는 것은 바로 시장 경제의 원리로 볼 수 있다.

산업활동에 따른 국민에게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이 부산만 자료가 없어 전국을 비교하므로써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년도별 공해피해 신고가 '87년에 1,442건으로 제일 높고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음성적인 것을 포함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주민으로써

터 공해 피해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년도별 공해요인별 진정 건수는 도표 2와 같다.

(표 2) 공해요인별 진정 현황(전국)

(건수 : %)

연도 항목	'86	'87	'88	'89	'90
총 계	1160	1442	1219	1201	1033(100)
악취	141	203	159	148	137(13.3)
대기	209	292	263	179	126(12.2)
수질	138	248	169	163	151(14.6)
토양	12	17	15	7	11(1.0)
소음·진동	630	602	546	590	507(49.1)
기타	30	80	67	114	101(9.8)

또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제도가 배출부과금이다. 배출부과금 부과 실적을 전국으로 보면 '87년은 1,812건에 30억3천2백만원, 88년은 2,538건에 88억6천4백만원, 89년은 2,866건에 98억5천7백만원, 90년은 3,216건에 99억6천8백만원으로 부과되어 환경오염방지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별 배출시설일수록 건수가 많고 공동방지지설에는 건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대책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 IV. 행정 권한과 행정 위임

##### 1. 행정권한과 행정 권한의 위임

국가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 정부조직법이 있다. 여기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등을 일일이 설명을 할 수 없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관계는 행정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거나 위임을 하게 된다.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규정에 의거 행정기관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있다.

둘째, 행정 간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있다. 위임·위탁의 기준에 있어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눈다.

○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수시로 감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하급행정기관의 업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책임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방자치체가 실시됨에 따라 대부분 행정권한의 위임이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위임되어 있어, 업무의 감독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두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업무는 수정이 가능하나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의 누수는 수정할 기회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의 행정 권한은 건설부장관 및 관련 행정 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공업입지정책심의회 의 규정이 '91년 1월 14일 대통령령 제13,251호로 명시되어 있다.

위원장은 경제기획원 장관이고, 부위원장은 상공자

**도시 계획이 잘 되기 위하여 부처간에  
국토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국토이용계획과 항공사진과 같은 지도로  
조제하여 각부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상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제외한다. 이렇게 조성된 공업지역은 요즘  
낙동강 수계에 위천공단조성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분쟁이 다소 감소할  
것이다.**

원부 장관과 건설부 장관이며, 위원은 내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 노동부 장관, 교통부 장관, 체신부 장관, 과학기술처 장관 및 환경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 소속하에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가 있다. 회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회장은 경제기획원 장관과 건설부 장관 및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와 같은 심의회에서 확정된 부지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공장등록과 배출시설설치 허가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행정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 2. 행정 행위와 권한 초과

우선 공장을 지으려면 공장 설치 신고를 하고, 다른 법률에 허가·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즉 복합 민원으로 종합적으로 처리하여야 공장이 설립되고 난 후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등록도 하지 않고 가동하는 공장이 너무 많아 '90.9~12월사이에 양성화 기간을 정하여 상공부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어도 공장 등록을 해 주도록 한 지침이 있었다.

양성화 기간에 등록된 공장은 서울이 6,234개소, 경기도가 5,951개소, 대구시가 3,552개소, 부산시가 1,649개소, 인천시가 1,219개소, 광주시가 386개소, 대전시가 274개소, 그 외 도가 5,040개소로 24,305개소로 나타났다.

등록 공장을 보면, 당연 등록이 4,402개소, 개선조건부 등록이 10,795개소, 이전 조건부 등록이 9,114소

로 상공백서에서 밝히고 있으며, 또한 양성화 기간에도 등록을 못한 공장이 33,644개소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개선조건부와 이전조건부 등록 공장은 새로운 공업부지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예를 들면, 산업폐기물은 부산의 산업이 신발공장으로 폐합성수지가 대부분이다.

폐합성수지의 처리 기준을 보면 용해를 하거나 소각을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무단수집소의 처리 실태는 소각을 할 폐합성수지가 처리 부족으로 자꾸 쌓인다. 국가적으로 자원 재활용에서는 권장해야 하나 개발제한구역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조치와 함께 제거명령을 하여도 제거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구청에서 직접 제거하기 위하여 작년에 5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처리할 업체가 없어 반납하였다.

특정폐기물은 국가가 관리할 책무를 두고 있는데, 처리 실태를 보면 산업폐기물의 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아직도 존재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폐기물은 발생하는 것보다 처리되는 양이 적으므로 시장 경제의 원리에서 가격이 비싸게 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기업경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매립은 제외)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업지역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장 건설은 환경을 저해하는 정도에 따라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앞에서 보아왔다.

구분된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이 48.6km<sup>2</sup>, 일반공업지역이 289km<sup>2</sup>, 준공업지역이 109.1km<sup>2</sup>이다. 공업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결과이며 앞으로 공장의 수용부지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440km<sup>2</sup>의 공업지역은 우리나라의 약 0.2% 해당되며 개발제한구역의 9%밖에 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합리적인 환경보전이 되지 않는다. 그결과 무등록 공장이 너무 많아 현실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공장조성이 아쉽다. 그리고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공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

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의 지역 설명 순으로 보면, 이전촉진지역, 제한정비지역, 유치지역 순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이전촉진을 한 공장들이 새로운 유치지역으로 옮겨서 공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한다는 말과 상통할 수 있다. 그결과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치지역이 충분하지 못하면 공업발전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공업발전법이 제정되어 있어도 실효성이 의문이다.

유치지역의 대상은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대도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인근에는 노동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 부산의 경우를 보더라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시기가 1971년 12월 29일로부터 도시계획을 하는 20년이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수용능력이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이 필요한데, 유치지역을 도시쪽으로 할 것인지 도시의 반대쪽으로 할 것인지는 건설부에서 결정하여 지침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도시 계획이 잘 되기 위하여 부처간에 국토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국토이용계획과 항공사진과 같은 지도로 조제하여 각부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상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제외한다. 이렇게 조성된 공업지역은 요즘 낙동강 수계에 위천공단조성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분쟁이 다소 감소할 것이다.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검토된 국토이용계획은 중복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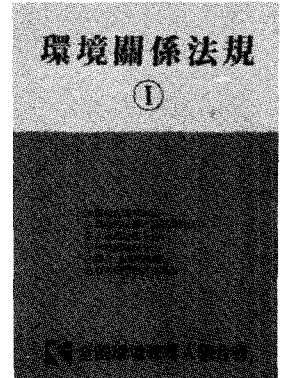
조성된 공단내 공장을 가동하려면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과 낮은 에너지로서도 제품이 생산되는 공장과 짝짓기를 하여 에너지 이용을 합리화 한다면 에너지가 절약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만큼 환경보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공장폐수도 산성폐수와 알칼리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을 적절히 배치하면 자동적으로 중화되어 폐수 처리에 큰 도움이 된다. 공업단지를 유치지역으로 지정하고 설계할 때도 행정적으로 종합적이고 합리적 현행 제도를 이용하여 공동 방지시설의 장점이 될 수 있도록 공장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

본 연합회에서는 최근에 개정된 법규내용을 수록한 「환경관계법규 I」에 이어 「환경관계법규 II」를 발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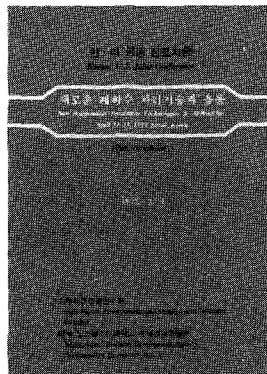
▶ 환경관계법규 I  
(4X6배판, 820쪽, 16,000원)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환경관계법규 II  
(4X6배판, 800쪽, 16,000원)

- 폐기물관리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합성수지 폐기물 처리 사업법
- 적출물 등 처리규칙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자연환경보전법
- 해양오염방지법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새로운 폐하수처리기술  
(4X6배판, 285쪽, 비매품)

- 아태환경영역연구원 발행
- 기존의 심포지엄 자료와는 달리 한미심포지엄의 발표, 토론내용, 평가결과, 발표자 및 참석자 3백여명의 명단을 수록, 행사 이후에도 정보교환이 가능토록 했다.